

「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363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5년 10월 20일
4.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
II . 제안이유

- 학생 자살·자해 등 정신건강 위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, 조기발견-전문개입-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통합지원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. 서울특별시교육청은 「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」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,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고도화와 학생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.

III . 주요내용

1. 위탁사무명 :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
2.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7조
-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3. 필요성

- 학생 심리개선 효과로 학교현장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음에도, 현 추진구조(단년도 용역계약)로 인해 학기 초 수요 집중시기에 지원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민간위탁을 통한 상시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함.
- 신청-인력배치-사업수행 등의 행정절차가 분절적·중복적이고, 계약체결 이전까지 전문인력의 채용이 지연되는 등 행정 비효율 발생.
- 정신건강 관련 병원, 학회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정신건강 정책추진의 고도화 및 사업의 연속성 보완함으로써,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위탁 사무

-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방문 심층평가·상담·컨설팅·사례관리 수행
-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 연계
- 의료기관 연계 시 발생하는 치료비 지원
- 사례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통계·성과관리
- 교사·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이해 교육 및 위기대응 연수 운영
- 학생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컨설팅
- 교육지원청별 거점센터 협력체계 구축 및 정례 협의체 운영
-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역량강화 연수 및 사례회의 운영

○ 보호자 및 가족 상담 등 가족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

5. 위탁 기간: 2026. 3. 1. ~ 2027. 12. 31.(1년 10개월)

6.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

7. 예산 규모: 금6,338,800천원(금3,169,400천원×2년)

IV. 참고사항

1.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민간위탁 추진 계획 : 별첨 1

2. 관계법규 : 별첨 2

○ 「학교보건법」 제7조 및 제11조

○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4조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363호로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.
- 동 동의안은 학생 자살·자해 등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,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‘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’ 사업을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추진 경위 및 동의안 제출 시기 검토

- 「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」 사업은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통합지원 사업으로, 학생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심층평가, 전문의 사례회의, 전문기관 연계, 치료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함.
- 현재 동 사업은 거점 의료기관과의 단년도 용역계약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,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용역 계약이 완료되는 2026년 3월부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.

[표-1] 2025년 학생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상담 위탁 용역 추진 개요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업기간: 2025. 3.~2026. 2.○ 추진방식: 위탁기관 사업 운영 ※ 지역을 나누어 4개의 위탁기관과 용역 계약 |
|--|

(단위: 천원, 명)				
구분	소요예산	지원인원	지역청	계약방법
지역 1	630,000	240	동부, 서부, 북부, 동작관악	협상에 의한 계약
지역 2	420,000	160	강서양천, 남부, 중부, 성북강북	
지역 3	210,000	80	강남서초	
지역 4	210,000	80	강동송파, 성동광진	수의 계약
합계	1,260,000	480		

○ 계약방법: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

○ 위탁사업예산: 총 금1,470,000천원(일십사업칠천만원/VAT포함)

-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2제1항1)은 교육감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신규 위탁사업은 조례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.
- 따라서 동 동의안은 2026년 3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앞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상 절차와 일정 측면에서 제출 시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나.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검토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7조²⁾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‘정신건강 위기 학생 상담 프로그램 운영’, ‘전문기관 연계’ 사업을 추진하며, 필요시 ‘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’ 규정하고 있음.

1) 제4조의2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2) 7조(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) ①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정신건강 위기 학생 상담 프로그램 운영
2. 정신건강 위기 학생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연계
3. 교직원, 보호자 교육 및 상담·연수 프로그램 운영
4.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학생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- 한편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(이하 “민간위탁 조례”)」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는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함.
- 「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」 사무의 주요 위탁내용은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방문 심층평가·상담·컨설팅·사례관리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치료 연계, 치료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, 이는 임상심리·정신의학 분야의 전문성이 직접 요구되는 영역임.
- 따라서 동 사무는 조례상 민간위탁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,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다.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

-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이 단년도 용역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매년 인력 채용 지연과 반복적인 계약 절차로 인해 학기 초 지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, 이런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위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- 실제 동 사업의 2024년 추진실적을 점검시, 전문의 사례회의가 1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6월 이후부터 진행되는 등 학기 초 지원 공백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됨.

[표-2] 2024년 학생마음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추진 실적 중 전문의 사례회의 횟수³⁾

구분(월)	3	4	5	6	7	8	9	10	11	12	계
사례회의 횟수	0	0	0	86	69	15	65	63	27	24	349

3) ‘2024 학생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결과보고’ (민주시민교육과, 2025.6.)

- 또한 최근 학생 정신건강 위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교현장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임을 고려시⁴⁾, 학생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부터 전문개입,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상시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됨.
- 이에 민간위탁 방식을 채택할 경우, 장기계약을 통해 상시 인력 운영과 체계적 사례관리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년도 용역 대비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. 이를 통해 학기 초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따라서 「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」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년도 용역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,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·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□ 이상으로 「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(2180-8263)	입법조사관	박소현(2180-8265)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4) 교육부·질병관리청(2024. 12.), 「제20차(2024년)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」: 중·고등학생의 약 12.7%가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으며, 4.8%는 실제 자살을 계획했다고 응답.